

오리협 공고 제 2018-06호

축산법 제29조 1항(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)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-57호(2017.7.12.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)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오리·종란의 수입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018. 9. 4.

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

종오리·종란의 수입신고 요령(안)

제 1조(수입신고 대상품목)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.

품 목	HS번호	품 명
종 오 리	(0105-13-1000)	오리(번식용)
	(0105-99-1010)	오리(번식용)
종 란	(0407-19-0000)	부화용 수정란(기타)

제 2조(수입종축의 규격) 수입종오리 및 종란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.

제 3조(수입신고) 제2조 규정에 합당한 종오리 및 종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오리협회장(이하 “협회장”이라 한다.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Invoice 1부.
2. 혈통(계통) 보증서 1부.
3. 선하증권(B/L) 1부.

4. 원산지증명서 1부.
5. 대금 결제서류 1부.
6.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.
7. 기타 종오리(종란) 여부 확인을 위해 협회장이 요청하는 서류 1부.

제 4조(수입신고필증 발급) 협회장은 관련서류 검토와 오리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오리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(규격확인서)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 5조(사후관리) ①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(2014.12.30. 가축검정기준) 제47조(검정의 의무)에 의거 수입된 모든 종축의 실수요자는 종오리 일반검정을 필해야한다.

② 제①항의 종오리 일반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)에 의거 본회에서 실시한다.

③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④ 필요에 따라 협회장은 현지실사를 통해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⑤ 협회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입실적을 기별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6조(기타)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요령은 201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1호 서식)

접수번호 : 제
호

종오리수입 신고서

수입대행자

무역업신고번호 :
주 소 :
상 호 : (전화번호)
대표자 :

원 산 지

검역시행장

국내도착
연 월 일

실수요자

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:
주 소 :
상 호 : (전화번호)
대표자 :

H.S	품 명	계통명	용도	세대별	수 량	금 액

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오리를 수입하였음을 신고하오니
신고필증(규격확인서)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
인

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귀하

구비서류 : 1. Invoice 1부.2. 혈통(계통) 보증서 1부. 3. 선하증권(B/L) 1부. 4. 원산지증명서 1부.
5. 대금 결제서류 1부. 6.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.

〔별지 제 2호 서식〕

필증교부번호 : 제
호

수입신고필증(규격확인서)

수입대행자	무역업신고번호 :					원 산 지	
	주 소 :					검역사행장	
	상 호 : (전화번호)						
	대표자 :					국내도착 연 월 일	
실수요자	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:						
	주 소 :						
	상 호 : (전화번호)						
	대표자 :						
H.S	품 명	계통명	용도	세대별	수 량	금 액	

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필하고 수입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.

20
년
월
일

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(인)